

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

## 1 유형 I 기업지원금



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


### 지원대상
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\*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  - \*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청년창업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- ☞ (취업애로청년) 만 15~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지원필요 청년,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, 북한이탈청년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



### 지원요건
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,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



## 지원내용

- (지원수준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(최대 720만원)
- (지원한도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



## 신청방법

-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
- \*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

## 신청절차

- 참여신청(운영기관) 후 청년 채용, 6개월 후 지원금 지급



# 1

## 유형 II 기업지원금·청년인센티브



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,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



### 지원대상

-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\*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
  - \* (제조업)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(C) 기업  
(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)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



### 지원요건

- (기업)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
- (청년)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도약장려금을 참여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
  - ☞ (근로조건 등)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, 기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



### 지원내용

- (기업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
(최대 720만원)

- (청년)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 
(18개월·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)

### 신청방법

-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

\*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### 신청절차

- 참여신청(운영기관) 후 청년 채용, 일정기간 근무 후 지원금 지급

